

제403회 국회
(임시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20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2.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2)
3. 장애인체육지원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1)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상정된 안건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1
2.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2) 1
3. 장애인체육지원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1) 1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1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2) 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2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2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2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2

(14시07분 개의)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1)
2.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2)
3. 장애인체육지원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1)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3)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8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6)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3)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축구 결의안**(임오경 의원 등 125인 발의)(의안번호 2112415)

(14시08분)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체부 2차관 소관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48조의12를 신설해서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도부터 주민 중심 지역관광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두레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만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반영하는 방법이 48조의 각 호에다가 6호를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이렇게 추가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우선은 그 뒤에 한 조문이 더 있으니까요 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전문위원 박희석** 3쪽입니다.

안 제48조의13을 신설해서 주민사업체 등록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사업체의 구성,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취소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관광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이 좀 다른 게 있으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정부 입장에서 이 관광두레를 활성화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등록까지 하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차관님,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관광두레라고 각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커피숍, 제과점, 여러 가지 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안하신 의원님은 주민 2~3인이 이런 주민공동체로 사업을 할 때 다 지자체의 등록을 받아 이런 얘기인데 등록까지는 사실은 안 해도 된다는 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세 명 모여 가지고 하는 것 다 등록하게 하면 너무 번거롭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이병훈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무래도 차관님께서도 이병훈 의원님과 소통했던 그런 것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저희가 그 쪽 방하고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충분히 얘기하고 의견 조율 끝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

○임종성 위원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쪽 방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러면 뭐……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일단 이 법을 내신 이병훈 의원님도 지금 현재 굳이 등록의 강제성을 고집해서 관찰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아니라면……

○임종성 위원 예, 동의하셨다고 저희 얘기 들었어요.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아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예지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윤덕 예, 말씀하세요.

○김예지 위원 2항, 3항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뒤로 미루고, 뒤의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의 일맥상통하는 법안 두 가지인데, 법안 이름은 다른데요. 그래서 그것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4항, 5항, 6항 한 다음에 제정안으로 가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임종성 위원 2·3항을 나중에 하자?

○김예지 위원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잠깐만요.

2항, 3항을 뒤로 하고 그다음에 4항부터 하는 건가요?

○김예지 위원 8·9항부터 묶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항, 5항……

○임종성 위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4항부터 하면 되지.

○전문위원 박희석 소위자료로 하면 43쪽입니다.

○김예지 위원 아, 4항하고 8항이……

○소위원장 김윤덕 잠깐만요.

2항, 3항을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4항하고 8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5항, 6항, 7항을 한 다음에 2항, 3항을 하자는 의견이지요?

○김예지 위원 예, 그렇게요.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동의가 되십니까?

○임종성 위원 4항까지 하고서는 하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 저도……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금 4항하고 8항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취지의 법안이라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날짜를 보게 되면 이게 2023년 1월 10일 날 발의한 법안이에요? 이용호 의원님 법안이 2023년 1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들 2021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수두룩히 쌓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법안이……

같은 취지의 법안이라서 올렸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오경 위원 이건 너무나 형평성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에도 저희가 체육인 복지법인가 유사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 발의된 법안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발의된 법안도 유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법안을 처리하거나 심사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배제를 시키고 했었던데요.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한 달 전에 낸 법안을 유사하다고 그래서 그 이유로 심사를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세요.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전적으로 양당 간사님이 합의를 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임오경 위원님 말 취지에 적극 동의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일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법안들의 성과를 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양당 간사간 합의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차후 이러한 유사한 법안에 있어서 다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다음 법안에 그렇게 똑같이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오경 위원 이걸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째 해 오고 있지만 유사하다고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병합 논의는……

저희가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법안을 배제시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를 깨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신중하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종성 위원 진행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소위자료 44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법안 모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압표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그리고 골프장 이용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에 이병훈 의원안은 부정판매에 대해서 위반 시 과태료를, 이용호 의원안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김승수 위원께서 운동경기 외에도 공연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규제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람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가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면서 부처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경과규정을 두는 등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은 그 밑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법 개정안 의결된 것과 같이 문체부장관의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추가해서 부처 차원에서의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의 44쪽 하단에 보시면 4조의2 1항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현재 이병훈 의원안이 있고 이용호 의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명료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희석 우선 이병훈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데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확보해서 부정판매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호 의원안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인데 골프장 이용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킹을

해 가지고 그 부킹한 것을 부정판매를 할 때 그것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골프장을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부킹을 해서 그것을 파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석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윤덕 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까 제가 정부 의견이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안 중에서.

현재 이병훈 의원안은 위반 시 과태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용호 의원안하고 똑같이 벌금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공연 등과 같게 맞춰질 필요가 있으면 문체부장관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병훈 의원안은 과태료고 이용호 의원안은 골프 문제에서 벌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공연과 같이 세가지를 일관성 있게 맞춰 주는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은.

○전문위원 박희석 공연법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해 주세요,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미미하게 있어온 암표 거래가 지능적으로 범죄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유통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특히 개정안과 같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문체위에서 수정 의결됐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역시 공연법과 같이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벌로 수정하고 법 시행일 역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쟁점을 잡아 보지요.

첫 번째 쟁점은 공연처럼, 벌칙조항으로 되어 있으니 이병훈 의원안도 벌칙으로 바꿔 주는 게 좋겠다. 지금 이것에 동의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만 이용호 의원안은 골프장 이용권 문제인데 이걸 벌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공연이라든가 운동경기처럼 암표가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하고 골프장 부킹을 매크로로 해서 하는 것하고 좀 달라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매크로로 하는 모든 건 다 처벌해야 되는 건지……

○이용 위원 골프장 이용권하고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하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골프장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부킹닷컴, 골프 관해 가지고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예약하잖아요. 이것 자체도 이걸로 따지자면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박희석 제가 이해한 바는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예컨대 개인이 들어가 가지고, 부킹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건 아니면 어떤 골프장 사이트건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요즘 골프 부킹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 대부분 예약이 되어 있고 양도라는 이름으로 쭉 나오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골프장은 한 3~4만 원, 인기가 있는 골프장의 황금시간대, 좋은 시간대는 양도라는 이름으로 한 6~7만 원씩 붙여서 파는 걸로 압니다. 증거는 없지만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잡았을 것이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의 아이디로 많을 때는 수십 개도 팔고 이러니까요.

○임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범죄고 일반인은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박희석 일반인이 하는 것은 아닌 겁

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김예지 위원** 전문위원회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매크로로 해서 양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샀는데 못 가게 되어서 양도하는 건지 어떻게 알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봤을 때 1명이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 또 여러 날에 걸쳐서 하고 있으면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임오경 위원** 지금 보니까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압표를 매매하거나 골프장 예약을 독점하는 등의 일이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훈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의 발의 취지도 이러한 일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이 법안은?

그렇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람권 매집행위가 운동경기뿐만이 아니라 콘서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함을 감안할 때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시법에서만 특례조항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의 압표 매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 위원** 저번에 12월 달에 법안소위 할 때도 이러한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 경범죄 처벌법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 하나를 냈어요. 발의했는데, 거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가 됐든 아니면 공연법이나 운동경기 관람, 모든 것들을 부처 내에서 규정해 가지고 처벌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아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법, 콘서트, 관람, 우리 부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희석**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12월에 소위 할 때에도 이병훈 의원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별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법으로

경범죄 처벌법이든…… 지금은 형법상의 처벌조항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일반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논의를 하시고 그때 이 법안 심사를 추가로 하자라고 계류를 하셨습니다.

계류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월에 공연법을 1소위에서 하면서 공연법에 대해서 자꾸 일반법으로 넘겨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이걸 단속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소위에서 결정한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위반 시에는 벌칙으로 처벌하고 문체부가 이런 걸 단속하거나 하는 권한이 현재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니 준비 기간을 1년 경과규정을 두자라는 내용으로 1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을 하였고 그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까지 가서 법사위에서도 체계·자구 심사하고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 문체위에서 이미 공연법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이 법도 그에 맞춰서 심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의사일정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법의 연속선상에서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게 맞아서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니 공연법에서 잡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그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도 문체부장관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추가시키고 그리고 벌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병훈 의원안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조항으로 가는 게 맞겠다.

다만 이용호 의원안은 매크로로 부킹하는 것은 빠진다고 하니까 쟁점 하나가 정리된 거지요. 부킹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킹된 골프장 이용권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나간 법이에요.

다만 그게 그 정도로 심하냐, 저는 아직도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공연이라든가 운동경기 같은 경우는 치열한데 골프장도 그만큼 치열한 거냐, 법을 가지고 막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아까 쟁점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

고요. 그게 심하다면 저는 법제화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자칫 이런 법들이 부킹 한번 해 보려고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일반인들까지 뭔가 괜히 위축되게 만들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법의 취지는 음반법, 공연법에 맞춰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 하나 질의할게요.

그렇다면 공연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술전람회나 모터쇼 그리고 엑스포 같은 국제박람회도 티켓을 예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별도 특례법을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우리 문체부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처 소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게? 그런 건 사실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괄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일괄법으로 가는 게 강도나 속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다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개 심각한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데 공연은 심각해요. 지금 현재 K-컬처가 막 뜨면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연 문제는 우리가 다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연은 합의하면서 그러면 공연법만 하고 나머지는 손 안 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대는데 또 다 손을 대 가지고 골프까지 할 거냐는 또 고민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하나씩 정리하면, 공연법이 통과되는 조건에서 공연법과 같은 법적 문제의식을 운동경기에도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큰 틀로 문체부장관의 그런 노력에 대한 의무 부과 그리고 벌칙조항으로 한나라는 정도는 합의해서 쪽 나가는 게 좋겠고.

골프까지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하자고 하면 넣는 거고 아니면 안 넣는 건데, 지금 법안이 사실 우리 여당 간사님 안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 위원 1소위에서 문화예술 공연법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2소위도 마찬가지로 2소위에 관련된 운동경기, 스포츠 모두 일괄되게 통합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골프장 이용권 부정판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회원골프장이거든요. 회원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회원권을 일부러 다른 일반인들에게 주고 그 수입을 본인이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뒀야 할 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골프장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회원만 가는 회원제 골프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법으로 규정할 이유는 굳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여기 문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게 매크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용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공연입장권이나 운동입장권은 사실 소위 압표상들이 사 가지고 광범위한 대중을 상대로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사회적 물의가, 파장이 있는 데 비해서 골프장 회원권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지만 전 사회적으로 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이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까 쟁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용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스포츠나 운동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장, 300장 또는 4000개, 5000개씩 구매해서 압표상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4000개·5000개씩 해 가지고 뿌릴 이유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국회가 더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시면 이용호 의원님 안은 다음에 더 하시고 앞의 것만 통과시키시지요, 어차피 다음에 또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윤덕 의사일정 제8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안입니다.

51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3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체육회가 사무공간 등 물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기본적으로 지방체육회에 이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그 취지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우리 정부 내부에서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자체의 부담이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행안부에서 정확한 반대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행안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기초까지 다 해당이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체육회

가 무상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체육단체만 이렇게 할 거냐, 다른 기관도 많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이용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체육회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220개소 중 146개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열악한 자치단체가 얼마나 이 비용을 내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열악한 자치단체라면 지금 146개 단체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1개 단체가 얼마씩 지금 내고 있는 겁니까, 지자체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열악한 지자체길래, 제가 알기로는 146개니까 1개 단체가 내는 임대료가 한 달에 거의 100만원, 200만 원 수준 아닐까요? 그렇다면 1년 해 봐야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지자체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열악한 상황 때문에 이걸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체위 소관기관뿐만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다른 단체도 이것을 유심 있게 지켜볼 수도 있고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 문체위이기 때문에 문체위 소관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부처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말고.

○소위원장 김윤덕 우리 문체부는 찬성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저희도 문체부니까 우리 체육단체들이, 지방체육회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함께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문체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왔다, 반대에 가까운.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는 그다음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행안위까지 가서 다 풀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는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책임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접촉해서 뭔가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여기서 두리둥실하게 저희한테 행안부 핑계를 대시면, 저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행안부에 가요? 답 한번 줘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잘 설득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 여기 보면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주는 개정안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 위탁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여기는 지방체육회잖아요, 그러면 지방장애인체육회도 포함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래서 아까 그 논점이 정리되면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방체육회를 하면 지방장애인체육회도 추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예지 위원** 당연히 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하면 맞습니다.

○**김예지 위원**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것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전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도 당연히 그렇다면 문화·복지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기관들도 지자체에서 모든 걸 같은 선상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무상 대여를. 그러다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사실은 그게

행안부 걱정이지요. 그렇게 되면 문체부만 아니라 다른 부처까지 번질까 봐 그런 건데 오늘은 체육을 논의하시는 거니까 이것만……

○**임오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체부에서는 이것 관련된 다른 단체들도 다 통과를 시켜 주실 거지요, 또 법안이 나오게 되면?

○**임종성 위원** 그건 또 그때 가서 봐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다른 단체는……

○**임오경 위원** 아니, 지금은 저희가 체육단체를 말했으니까 장애인단체도 법안을 발의한다면 저희가 또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김예지 위원** 아니, 그게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장애인 체육회는……

○**임오경 위원** 같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여기 속에다 같이 문구를 포함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지방체육회에 대한’이 아니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런 것이고, 자꾸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을 풀어 주시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안 되는 근거를 자꾸 만드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임종성 위원** 간사님, 사회나 보시고 위원들이 얘기할 시간을 줘야지. 모든 걸 혼자서 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윤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이게 사실 모든 지자체가 동등한 입장이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체육회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가 보면. 또 단체장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합운동장도 아예 없어요. 체육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했을 때 나야 문체위니까 당연히 오케이를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남겨 두어야지 모든 걸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사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자치단체들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그래서요 이게 ‘필요한 경우 대부·수익하게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종성 위원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없는 데는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느냐……

○김예지 위원 ‘해야 한다’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임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곳은 좋은데 할 수 없는 곳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느 지역은 해 줬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러냐?’ 항의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상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소위원장 김윤덕 예.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의견 조율이 된 거지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체육회 추가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 위탁도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것,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정된다.

또 거기에 더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아까 법적 문제의식은 공유가 됐고요. 구체적인 것까지 진전시켜서 나간 것까지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안입니다.

54쪽입니다.

우선 안 제18조의4 관련입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신고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각종 체육회와 경기단체 등에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5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8, 49조의2, 55조 제2항 등입니다.

동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장의 시정 또는 징계 요청 사유에서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행위를 삭제하고 해당 행위 시에 징계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신고방해, 신고취소 강요, 고의적인 축소·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 그리고 과태료에 의한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대상 범위, 벌칙 수준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상 범위 관련해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등의 은폐 또는 축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18조의6의 대상이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체육계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의무대상자와 위반했을 때의 처벌대상자를 일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벌칙 수준은 이와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신고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국민체육진흥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벌칙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고요.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 금방 전문위원 설명한 대로 신고 등의 방해·취소 강요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같이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가 성폭력 방지법에는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만 원 이하로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처벌 대상에는 체육단체의 임직원, 담당자뿐 아니라 제삼자 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육단체 임직원, 담당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서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 지금 전문위원 의견하고 정부 측 의견에 신고자 범위에 있는 체육지도자, 선수 및 관리자 이렇게 한정하는 내용 삭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사주되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어쨌든 은폐를 동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음, 다른 위원님……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의 수정 수용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장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고당사자 주변의 학부모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학교 선생님들.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물어 덮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 또 학교 체육단체부에 대해서 명예 손실이 되기 때문에 주변, 특히 학부모들·친구들이 강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것을 체육계 임직원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으로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 같아요. 이 법안을 보면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계 종사자라면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로 심판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김윤덕 ‘누구든지’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임오경 위원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지금 법안을 보게 되면.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누구든지 다 신고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한정한다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럼 ‘누구든지’ 거기다 넣는다고 하면 또 하나 그러면 학교장……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 단서를 빼 버리니까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관련자 모두가? 그냥 모두가?

○소위원장 김윤덕 예, 누구든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개정안의 괄호를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육인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잘못하면. 그런 뜻입니다, 한정을 안 하니까.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오해는 풀리셨나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좀 차분히 생각해 주시면…… 일단 임 위원님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하고요.

벌칙 수준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벌칙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맞춰 주자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인데 성폭력이 300만 원이니 성폭력의 300만 원에 맞춰 주자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셨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전문위원 박희석 아까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선 2차관이 추가로 한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다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추가로 아까 2차관 이야기하신 부분이 과태료 부분에서 성폭력 특별법의 규정에 맞춰서 과태료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 부분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벌칙 수준에 대해서는 문체부, 정부 측 의견이 수정 수용되는 안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고의무자에 대한 범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문체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지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18조의4를 말하는 거지요, 누가나 다 들어가는 게? 한번 확인차……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49조의2(벌칙)에 보시면요……

○임오경 위원 18조의4.

○소위원장 김윤덕 56쪽.

○임오경 위원 18조의4에 보면 개정안에는 ‘체육단체의 임직원’ 이것을 넣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여기다 누구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면 좀 다른 말씀이시네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여기에 넣은 것에 말씀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임직원하고 체육지도자 이외에 심판도 넣자는 말씀……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개정안에 체육단체의 임직원 넣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봤을 때 심판이랑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아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누구나라고 하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 누구나는 여기는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벌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과고는 다르게 가시네요. 저는 앞쪽에다 말을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임오경 위원님께서 54쪽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신설하는데 체육지도자·선수·선수관리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심판도 추가하자는 건가요, 지금 얘기가?

○임오경 위원 예.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신고의무자에 체육단체 임직원 이것은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심판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학교체육에서 발생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그것을 다룰 것인지라고 한다면 여기가 학교장도 들어가야 되고 교사도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면 심판 이외에 학교 관계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학생으로 봐 줄 것인지.

제가 항상 이것을 강조했던 말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일어나는, 경기 도중에 일어나는 것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의 문제점이지만 학교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학교 안에서 학생선수가 어떠한 사안이, 싸움을 하거나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이것을 경기단체에 위임하는 것인지, 왜 대한체육회로 넘어오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에 학교장·교사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신고의무자에.

○전문위원 박희석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희석 이게 개정안 18조의4 2항인데요. 내용에는 없는 1항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

행에 보면 밑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은 게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해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에는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임직원, 2호가 선수관리 담당자, 3호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4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 5호가 초·중등 그다음에 고등학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종사자, 이런 식으로 죽 있습니다.

학교·학원·시장·군수·구청장까지 해 가지고 이게 모두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은 초·중등, 고등학교까지는 되어 있고 학원·교습학원·과외교습학원여기의 설립자나 운영자 이런 사람들까지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심판이라고는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심판 등은 경기 관련 종사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장·교사 등은 학교운동부하고 관련자를 뜻하는 거고. 그렇다면 체육단체의 임직원 외에도 체육단체 관련 종사자 그리고 팀 관련 종사자 등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심판은 그러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7~8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필요하면 이것을 나중에 고치면 되거든요, 문화체육부령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하여간 심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문화체육부령 할 때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법안으로 심판을 별도로 추가로 자구를 넣어야 된다면 또 법안을 발의해야지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체육단체 임직원 그리고 심판까지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속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필요하다면 또 밑의 하위 법령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수용할 수……

○임오경 위원 심판은 하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항목에다가 나열할 때……

○임오경 위원 심판은 메인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말씀하십시오,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벌칙 대상 범위에 모든 인원이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신고의무자 또한 모든 인원이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예지 위원 1항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용 위원 그런데 1항에 누구든지 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왜, 예를 들면 임직원, 선수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소위원장 김윤덕 전문위원님, 처음부터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1항 불러 줬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 1항은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항에는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대상이 지금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항의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신고 대상자에 체육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이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니 심판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뒤의 벌칙 조항에서 제한을 두지 말고 앞과 같이 ‘누구든지’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은 18조의6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를 할 때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축소·은폐하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이 뒤에 가면 개정안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니 앞에도 누구든지 뒤에도 누구든지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약간 다른 조항입니다.

○이용 위원 그런데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왜 거기는 누구든지라고 안 하고 체육지도자, 선수관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소위 말하면 어떤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인권침해 등과 같은 것들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시키려던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길 지나가는 사람을 ‘너 왜 신고 안 했어?’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체육단체에서 법적으로 정한 사람은 방관조차도 안 되게 의무화된 사람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법적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신고의무자를 두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만 신고의무자를 두는데 거기에 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취지 자체가 체육단체와 관련된 것은 이미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부령으로 정한 사람이라고 하니 부대적인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정작 중요한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임오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심판들이라든가 그런 체육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작 빠지더라,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축인 심판은 아예 명시적으로 넣는 게 좋겠으며 부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넣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정리될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님 안은.

저는 그렇게 이해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척하고 신고의무자 문제하고 구분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을 내면요,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 해서 명시적으로 넣고, 그렇지요? 이번에 어차피 조항 만드는 거니까 넣고 그다음에 부령으로 정할 때, 임오경 위원님이나 이용 위원님은 현장에서 많이 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에 걸가지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부령을 다시 재조정하면 어떨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판은 법에 넣고요. 나머지 건은 저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상의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체육단체 임직원 중에 심판은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러면 그 현장……

○이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신고의무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 내에서 이것을 계속 방패막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나 아니면 체육 관련종사자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들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학부모요?

○이용 위원 예.

○소위원장 김윤덕 학부모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것은……

○이용 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나갈 테두리가 많아요.

○전문위원 박희석 부령을 개정할 때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시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경기단체는 이렇게 넣으시고 그것은 부령 개정할 때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 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다 감싼다니까요. 심판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학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래서 학부모 문제는……

○소위원장 김윤덕 너무 예민한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경기단체 이것은 법에 넣고 학부모는 부령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윤리센터의 시정·징계요청 사유, 신고 등 방해,

취소강요' 여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사건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에 있어 고의적인 축소·은폐(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인 경우로 한정)' 왜 여기는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넣자고 했는데 여기는 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팔호 이것을 지금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거나 이런 것은 누구든지 은폐를 할 수 있으니까 처벌 대상에 제한이 없이 이 팔호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팔호는 다 삭제를 하자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18조의6 관련 해서……

○임오경 위원 지금 55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희석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지금 벌칙 1년 이하 여기, 신고 등 방해, 취소 강요 여기 팔호부터 다 삭제한다는 거지요? 담당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밑의 한정한다, 한정한다, 그 3개 다 삭제하신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 꼭 삭제시켜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희석 57페이지에 정리된 게 있습니다. 57페이지 하단 49조의2(벌칙)에 보면 1호에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하고 팔호 쪽 있고요. 2호에도 팔호 있는데 수정의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호 부분은 다 뺐습니다. 팔호로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문구를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58쪽,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수정의견(안)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안)으로 정리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정리해도 되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신고의무자에 체육단체 임직원 그리고 심판은 넣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부령 정할 때 이용 위원님하고 임오경 위원님

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추가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7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안입니다.

6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해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을 반영하고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사항을 포함하며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문에서 한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4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 내용 중 세부항목 9호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장애인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보장에 관한 사항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스포츠관람 보장에 대한 특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표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마지막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시 한번요,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임의조항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핵심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김예지 의원님의 의원안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축구와 야구 등 전국 스포츠 경기장 21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었지요? 모르시나요?

경기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확인됐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조사 대상 경기장 매표소 중 53.2%가 정해진 기준보다 높게 설치되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조사가 됐고요. 또 조사 대상 경기장의 23.8%는 건축구조물 등으로 인해 장애인관람석의 시야가 방해되어 경기 관람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지적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장애인들의 스포츠관람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요. 추가로 문체부가 이번 소비자원 조사로 확인된 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야구를 관람한다 그래도 장애인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관람석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지 위원 제가 수정 수용에는 동의하는 게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동의를 잠정적으로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이것 발의한 데에는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양한 조사에서 나오는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복지위원회 법안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줄여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이런 물리적 접근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국가에 있는 모든 일정한 장소를 뜻하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길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어 주신 대로 이 4조에 따르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면 차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타 부처 법안이다 보니 사실 이게 있어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내가 ‘차별이야’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비로소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형법적인 처벌이 아니고 인권위에 갑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지요. 그런데 권고한다고 하나요?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 들으셨던 물리적 접근성 외에 사실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나 야구…… 야구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람하는 경기인데 제가 지난해에 사실 하일성 야구선수분이랑 같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건데 전에는 라디오나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중계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중계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해도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 시차가 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감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에 있는 그런 법안으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지원 방안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계단이 있어도 괜찮고 하지만 또 지체장애인들은 계단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또 계단이 없고 물리적 접근성이 다 잘 되어 있어도 저 같은 감각장애인 경우는 가 봐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접근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체육 지식이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어렵지요. 아무튼 수정 수용이라도 그렇게 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차관님,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경직성 때문이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이 법안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지금 김예지 위원님께서 수정 수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관님 제실 때 재정을 투입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뭔가 상징적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일보시키는 일들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은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김예지 위원 저 한 가지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말씀하세요.

○김예지 위원 아까 수정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가지 더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기본계획 안에 이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게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기본계획 그 속에 여러 가지를 넣자고 하시면서 추가한 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에 이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이라는 건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항에 따른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라, 이 정도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차관님께서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을 진일보시키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일단 하시고요. 나머지는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자료 63쪽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IOC, 우리 정부, 북한 당국에 대회의 공동개최와 함께 북한선수단의 참가, 공동응원단의 파견, 문화행사의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소위 때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께서 결의안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평화올림픽 구현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김윤덕 위원께서 이념이나 진영 간 대립을 떠나서 화합을 강조하는 올림픽 정신을 감안해서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용호 위원께서 대한체육회나 IOC 차원에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요.

김예지 위원께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북한에 공동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강원도 사항이라든지 IOC 관련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현재의 여러 가지 남북 관계나 북한의 자세를 감안할 때 정부는 이 결의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강원도가 2020년에 유치시 개최를 제의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문서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기흥 회장님하고 직접 말씀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확인을 해 본 것이지요.

○임오경 위원 이기흥 회장님께서서는 저에게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하시는 분은 많은데 강원도에 문서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일단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항상 문화예술·스포츠가 앞장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지난 12월 6일 날 소위에서 이상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체육기금의 사용 용도에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문체부의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저희 쪽에서 했었지요, 2소위에서.

○임오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 없이 통과가 잘됐습니다. 체육교류 활성화사업을 추가하여 남북체육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어요.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체육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때 그 법안은 저희가 같이 논의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남북체육교류사업은 그 조항이 아니라도 지금도 기타 조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굳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 하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거지요. 그

런데 그게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사용 관련 법안은 되고 평화대회 구현을 촉구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기금 사용은 지금도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임오경 위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또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이렇게 해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러 이 기금 사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대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저는 반대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거지요, 저는 신중하게 이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오경 위원 제가 아까 여기서 읽은 말씀이 당시 이 법안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지금 차관님이 하신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취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제가요?

○임오경 위원 예, 문체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아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끝까지 반대를 안 했을 뿐이지요.

○임오경 위원 속기록에 찾아 보시면 문체부에서 당시 이상현 의원님 법안 발의에 대해서 문체부의 의견을 이렇게 하려는 취지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어불성설 같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남북관계에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계속 미사일을 어제 또 쏘고 하고 있으니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멈추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난관에 부딪혔으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항상 앞장섰던 문화예술·스포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은 정부에서도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A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지요. 하지만 B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다고 그냥 닫고 있어요? 그럴수록 스포츠를 통해서 저희가 평화올림픽 항상 구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런데 위원님, 그게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꺼낸다는 게 과연 공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국가와 국가 간은 적대적일 지언정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 법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관계가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때문에 왜 그것을 들먹이면서 스포츠를 거기다 그렇게 연관을 시키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도 전조선야구 대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때도 전조선야구 대회 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남겨 놓은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난관을 스포츠를 통해서 열어 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 이용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2소위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던 중점 사항이 북한과 우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격앙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추후 결정하자라고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쏘았어요, 최근에 2월 19일 또 오늘 2월 20일 오전 7시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스포츠를 정말 위하는 길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국회에서 축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보다 누차 얘기하지만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과연 지도자들이나 선수들 입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남북 축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정부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 사실 남북이 경색되고 또 전쟁 위기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중이지만 이럴 때도 올림픽이 열리거나 월드컵이 열리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해서 자기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극과 극을 달리더라도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노력들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경색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색시켜 버리면 사실상 나중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완전히 막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념이나 진영 간의 논리가 아니라 스포츠는 스포츠로 보고 문화는 문화로 보고 예술은 예술로 볼 수 있는 해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상당히 고립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또 어느 때엔가는 뭔가 실타래를…… 문호를 약간이라도 개방해 놓으면 스포츠에 의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결국은 남과 북이 공동입장하면서 어찌 됐든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이끌어 냈듯이 스포츠에는 무한한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 논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포츠 또 평화적으로 올림픽 구현을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차관님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IOC를 통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나요? 지금 단체장들한테 이것을 다 여론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그런 제안을 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는 전쟁과 상관없이 경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이런 제안을 해 온 건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IOC나 이런 쪽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참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임오경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이든 IOC든 스포츠를 참가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스포츠는 또 전쟁과는 별개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취지로 해서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2024년 강원도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비유럽권 최초라고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공동위원장이 지금 현재 6개월간 공석이에요. 노력을 안 하시니까 저는 노력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곧 임명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6개월, 7개월 공석인데 곧 임명된다는 말씀을…… 내년 2월입니다.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기흥 회장님은 당연직이니까 공동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은 전쟁이고 관계는 관계고 스포츠는 스포츠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참 많은데 오늘 법안소위기 때문에 많이 양보하는 거예요. 간사님들 합의하에 상임위에서 결의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현안보고를 저는 받고 싶은데 못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사님. 저번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는데 못 하게 해서.

제가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다루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공동위원장 자리가 공석에다가…… 강원도 지금 건물, 시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무슨 지금 경기를 치른다고…… 1년도 안 남았어요. 11개월이에요. 올 11월부터는 강원도로 다 전지훈련 올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이 시기에 한국으로 사전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잔칫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곧 위원장 선임됩니다’ 차관님 그 말씀이 진짜 책임이 없어 보이십니다. 1년도 채 안 남은 걸 갖다가 그 아이들……

이것 하나 보고 피땀 흘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스포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단체에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에서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를 촉구한다 또 공동응원이나 문화예술, 공동 참가 이런 것 정도라도 저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기를 떠나서.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팀도 참가해라 또 공동응원하자, 공동 경기를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현장에 있는 선수들에게 불합리를 준다면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거라도 저는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차관님, 2차 대전 중에 연합군하고 동맹국하고 싸울 때 크리스마스 날 하루 휴전하고 크리스마스를 같이했다는 얘기도 들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문체위 차원에서 결의안에 대해 소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쏘 버렸기 때문에, 저도 미사일 쏜 것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의 정치적 조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주어져 있고……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의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이 동계청소년올림픽 결의안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북 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냐, 그래서 굳이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결

의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나에 어떤 생각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떤 진영 논리 또 정치적 조건, 주어진 상황에서의 현실 논리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평화적으로 또 남북한이 함께하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나라고 하는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 결의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게 지금 아시는 대로 상황은 잘 아시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 통일부라든지 이런 부처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거기보다도 어떤 방향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혹시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나 국방부장관하고 국방부차관하고 문체부장관하고 문체부차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스포츠를 매개한 교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물론 맞는 말씀인데……

○소위원장 김윤덕 그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부 전체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물론 조금 더 앞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 전체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게 간다는 것은 정부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앞서 나가는데 그 앞서 나가는 사인마저도 지금은 그걸 발견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임오경 위원 아니, 정부하고 뭐가 다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미사일 쏜 게 정부가 지금…… 아니,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한두 번 쏘니까? 미사일을 쏘도 저희들 지금 정상적으로 다 회의하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부에서도 미

사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과, 업적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발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체부라면 업적,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되지 않는 것 이것 우리 문체부만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면 다 배제를 시키고라도 우리는 청소년동계올림픽에 열광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축구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정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절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차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소위원장 김윤덕 회의가 길어졌으니까요, 일단 임오경 위원님의 충심은 잘 알았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문체위 소위에서 또 문체위 상임위 차원에서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또 북한과 함께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거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정부가 그런 취지에서는 좀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일부 의견 또 국방부 의견 또 각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면서 논의가 옥신각신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체육을 주관하는 문체부 또 문체위원회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체육행사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자꾸 이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시 결정할 수는 없고 좀 미뤄야 되겠지만 최소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안 2개 남았고 또 공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할까요? 이것 또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용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이용 위원 청소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IOC에서 왜 청소년올림픽을 만들었냐 하면 그

게기가 올림픽이라는 것은 성적 위주의 성인들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만큼은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축제 분위기로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남북 공동 단일팀이 이루어진다면 평생에 한 번 있을 자기 인생의 축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7살 이하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선발이 되어서 해외에서 포인트를 따고 출전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공동 단일팀으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의 상실감 또는 그 부모들의 상실감은 과연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이것 한번만 되짚고 가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의 제안대로 늦게 하기로 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체육진흥법안과 제3항 장애인체육지원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 의원안 그다음에 제3항 장애인체육지원법안 도종환 의원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과……

○소위원장 김윤덕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희석 10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건의 제정안 관련해서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공청회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중 쟁점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 배치하는 조항과 관련한 사항 그다음에 기존 현행법에 의한 스포츠인권센터 등과 제정안에 의한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등 기관이 혹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애체육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조문이 상당 부분은 동일하고 겹치고 일부는 조금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조문 조항별로 제목만 정리한 표를 한 장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제명입니다.

법률안의 제명이 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고 도종환 의원안은 장애인체육지원법안입니다. 진흥과 지원의 의미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고 어떤 쪽으로 결정할지 논하기에 앞서 현행 체육 관련 부분 소관 법률 제명을 참고하시도록 오른쪽에 넣어 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명에 쓰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많고요.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법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이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별도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겠다는 큰 취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큰 골자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단체와 관련된, 전문위원도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별도 체육회의 근거라든지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라든지 장애인체육진흥자문위,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김윤덕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일단 법안 이름부터 얘기를 하는 게 큰 틀의 문제의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흥법과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작년에 통과된 게 스포츠기본법이라고 새로 나왔거든요. 스포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애인체육보다는 장애인스포츠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진흥법도 좋고, 뒤에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체육을 더 넓게 포괄하는 게 스포츠 같습니다, 사실은요. 체육이 직접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어떨까 하는 게……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진흥법이나 지원법이나 하는 논쟁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체육이라는 개념을 스포츠라고 쓰고 싶다는 거였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법안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정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보다는 더불어 장애인체육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긴 법안인 만큼 장애인체육진흥법보다는 장애인체육지원법으로 제호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 이유에서도 장애 유형별·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육시설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이나 또한 장애인체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만큼 장애인체육지원법이 보다 적절한 제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 위원 스포츠진흥법이나 체육진흥법이나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원장 김윤덕 아니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용 위원 다 포함되어서?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장애인스포츠 지원·진흥법도 괜찮습니다.

○이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말뜻과 유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법, 아시안게임 지원법, 이 지원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진흥법이든 체육진흥법이든 진흥법 이 네임(name)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저는 진흥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의견을?

○이용 위원 아닙니다, 절대.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예지 위원 저는 의견이 있는데, 지원과 진흥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진흥과 지원이 안 됐나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부분의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기본법 그리고 제가 발의했던 스포츠 진흥법 또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제정·통과된 스포츠클럽법 등에 기본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동등한 근거를 가지고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장애예술과는 다르게 스포츠, 체육은 문체부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어요, 과장님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이 제정안 2개를, 물론 지금 1시간 2시간에 이것을 한다면 한다 통과를 해야 된다 논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인 이 법을 왜 했을까의 문이 많이 들고요. 또 실익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을 좀 잘 챙겨서, 예를 들어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효과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안질의라든가 문체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챙겨 주시면 충분히 근거가 없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이걸 한 조항씩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스포츠윤리센터와 관련해서도 장애인 관련 윤리위원회 이런 걸 또 신설하자 이것도 지금 스포츠센터 있으니까 그렇고 대한장애인체육회도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전달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전달체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 조금 더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익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살짝 듭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끝나셨습니까,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혹시 논의를 더 하게 되면 부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예.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 저도 김예지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선진국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문체부 차원에서는 장애인체육과장님 나와 계세요?

○소위원장 김윤덕 공석입니다.

○임오경 위원 안 계세요, 지금?

○김예지 위원 안 계십니다. 지금 뵙고 있어요.

○임오경 위원 아, 공석이라는 게 과장님이시구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해외를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선진국인지 아세요? 장애인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 문화예술·스포츠가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관련 해외의 입법 사례가 있습니까?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별도 법이……

○임오경 위원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장애인 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저는 해외 사례도 한번은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보실 것 같아서. 확인한 바로는 없더라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 우리나라 장애인선수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35종목에서 1만 4289명의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의 경우 2022년 참여율이 26.6% 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1.7%가 늘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체육의 성과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 안에서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뒤로 하고 저희가 지금 진흥법이나 지원법이나, 활성화사업과 지원을 위한 법률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법·제도적 보완은 필요한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입법 사례가 없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저희가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진흥법과 지원법을 저희가 하나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복지부하고 또 연관성이 너무나 많이 되는 연계성이 있고요.

또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스포츠인들과 생활체육을 즐긴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장애인들 재활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는데 이게 다 중복 사업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분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에 관한 진흥이나 지원법에 대해서 이 법이 실효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합성, 또 다른 부처와의 연관성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사실상 미료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뭔가 논의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료하지 않으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법안 논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해야 된다면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장애인체육진흥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지, 장애인체육지원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지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포츠라는 말을 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논의는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애매모호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예지 위원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임종성 위원 계류해 놓고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이걸 오늘 계류시키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계류시켜서 신중히 접근하자라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워낙 광범위해요.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압축시키고 쟁점을 별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체육에 관한 것은 김예지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임오경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예지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는 걸 우리 소위 차원에서 존중해 준다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예지 위원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건 아닌데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이 법안이 장애체육인을 정의하는 것부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법안은 그것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보는 장애인이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에서 ‘이렇게 할까요?’ 하면 모르시는 위원님들 같으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얼마나 좋아. 만들어 주자.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고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다고 해서 지원이 잘되거나 진흥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발의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정안은 꼭 논의를 이렇게 한 번에 끝내지는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의부터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그게 앞부분인데요. 물론 제목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정의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생활체육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법안의 목적성 자체에 의문이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쟁점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논의하고 통과다 아니냐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김예지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다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법을 제안해 주신 이종성 의원님이나 도종환 의원님이 우리 문체위원님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의견 자체가 상당히 그냥 흘러진 상태로 계속 흘러가거나 내지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세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보다 주도력 있게 논의되지 못할 약점이 있으니 신중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는 계류시켜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이 소위 내의 위원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것 더하기 주도적으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김예지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이 보다 세세한 내용을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논의에서 좀 더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제안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게 현장의 의견이다 포함됐는가에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체육인만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장애체육인이 누구나 그걸 봤을 때 현재 체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체육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리는 것을 원하느냐? 지금 현행으로 근거가 있는 체육인에 관한 것들로 장애체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장애인이 아닌 체육인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것까지 가지고 들어올 텐데, 물론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논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소위 논의도 필요하지만 현장 간담회 등도 필요하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활동 방식에서 의원실 자체의 연구라든가 어떤 정합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의견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은 계속 계류되다가 결국 소멸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이 법을 내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장애인 법률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문체소위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양자를 고려한다면 두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임종성 위원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오경 위원하고 김예지 위원이 이걸 가지고 토론회를 열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든 다양하게 그분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꼬집어내 가지고, 이게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심도 있게 현장에 가서 직접 들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고 그리고 계류된 것을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든 폐기를 시키든 그렇게 하면 되지 계속 말꼬리 잡으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 죄송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태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님하고 저한테 넘기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정부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수용 곤란이라는 내용은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 간단하게 보면 법안의 취지 및 목적은 수용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도 위원회·센터 설립은 수용 곤란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장애인체육진흥법에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부분은 수정 수용 또 직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 체육 고용지원은 수정 수용,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은 수용, 이것 정부에서 의견 주신 것 맞나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신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요, 왜 이게 수정 곤란이고 왜 수정 수용인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도 냈지만 저희 법안소위에서 이것을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지금 현재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장애인지원법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이라면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 문체부 차원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저희를 이해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김예지 위원님하고 저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윤덕 떠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임종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하달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왜 위원장님한테 반하는……

○김예지 위원 그리고 제정안 같은 경우는 조하나씩 뜯어서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만 따로 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윤덕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장애인체육진흥법안과 장애인체육지원법을 보게 되면 장애인 스포츠산업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심사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7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님의 이 법안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면 이것 또한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해가 되세요,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이미 다른 법안에 있고, 저는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제정안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루는 것들이 더 많고 이미 이게……

제가 아까 과 말했잖아요. 체육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근거가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대한체육회랑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지원을 받고, 물론 예산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것들을 챙겨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뜻은 아마 위원장님이…… 소위에 기록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아요.

○소위원장 김윤덕 김예지 위원님, 그러니까 문제는 장애인체육진흥이나 지원이나 이 법률안에 대한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안된 이 두 법을 현실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의 어떤 견해는 결국은 나는 실익이 없고 다른 법안으로 진행되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체육 지원·진흥에 관한 법안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 할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애매모호하면 우리는 어쨌든 국회의원 두 분이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 법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좀 더 명료히 자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으로 뭔가 얘기할 때 그 상황이 오면 그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 견해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공청회가 상정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섭외 시간들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다음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먼저 공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 관

체 육 국 장

관 광 산 업 정 책 관

조 용 만

최 보 근

김 상 옥

○출석 위원(6인)

김 예 지 김 윤 덕 이 용 임 오 경

임 중 성 전 재 수

○청가 위원(1인)

배 현 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전 문 위 원 박 회 석

입 법 심 의 관 전 완 회